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16대 총여학생회

김중기 성폭력 대책위원장 사직. 비민주적, 반여성적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규탄하고 개선시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연세대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반성폭력 학칙의 부실함과 함께 비민주적이면서 동시에 기본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성폭력 대책위원회¹⁾(이하 대책위)의 운영이 그 원인이다. 따라서 총여학생회는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과 함께 대책위 규탄의 일환으로 대책위의 파행적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중기 대책위원장의 사퇴 운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일 김중기 대책위원장은 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학부총장 직위를 사직하면서 성폭력 대책위원장직도 사직하였다. 성폭력 대책위원장 사퇴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학교측에서도 알고 있었을 테지만, 대책위원장직을 사직한지 일주일도 지나도록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폭력 대책위원장이 사직을 했다면 대책위원²⁾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위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대책위의 운영이 그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평소 대책위 테이블에서 학생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 대책위원장 사직도 이루어진 것이다. 더불어 대책위원장이 사직한 그 시점이 대책위원장 사퇴 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 경악스럽게 한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와 운동을 무시로 일관했음에 다름 아니고 대책위원장은 파행적 대책위 운영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간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조차 지키지 않는 대책위의 운영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대책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던 우리의 계획은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금 고민해야 할 때이다.

대책위의 미래가 암담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대책위가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할 대상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대책위원 선임에 관한 것이다. 각주 2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책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위원 선임에 있어서 학생의 선택권은 전무하다. 대책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 교학부총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있어 총장 선거가 끝난 후 새로운 대책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대책위를 구성하는 다른 당연직 위원들과 교수 위원들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없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성폭력적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대책위원들 때문에 대책위가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총장 선거 이후 바뀌는 대책위원 선임에 있어서 어떠한 요구를 할 통로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1)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 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 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다만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단 직원과 학생위원은 정기회의와 각각 직원과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에만 참여하며, 이 경우 그 참여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된다.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총장 후보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로지 등록금?

그렇다면 대책위가 새롭게 구성되는데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현재의 총장 후보들은 어떠한가. '재정 마련에 온 힘을 쏟을 것임을 약속한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등록금 인상을 갖가지 방법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총장 후보들에 대해 학생들은 불신임을 선언하고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겠다고 한다. 물론 학생들(아직 '우리'라고는 쓰지 않겠다.)의 그러한 요구는 정당하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반성폭력 운동이 중요하고,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성폭력 대책위원회 규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한다면, 총장 후보들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바로 이 지점에도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학생 교육권과 여성 교직원의 노동권에 대한 그들의 문제의식 없음을 지적하고 일깨워야 한다. 여성 관련한 공약이 겨우 여성교수의 보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뿐이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 후보는 형식적으로나마 모두들 내세우는 이 공약조차 없다.) 또 어떤 후보는 소수자(여성, 장애인, 외국인)를 존중하겠다고 내세운 것이 '여성 교수들의 법정 출산휴가를 존중하는 교내 분위기 확립'이다. 실소를 금치 못할 대목이다. 이것이 바로 연세대학교가 여성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현주소이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니 보장하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존중'하는 '분위기 확립'이라니! **총여학생회는 학내 여성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는 총장 후보들을 인정할 수 없다. 총장 직선제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등록금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총장 직선제와 더불어 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학생 참여를 보장시켜야 한다!

위에서도 지적했듯, 현행 학칙대로라면 대책위 위원이 선임되는데 있어 학생들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이전 대책위와 별반 다르지 않은 대책위 운영을 개탄하며 지켜봐야 할 것이고,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후에야 대책위를 규탄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책위가 이러한 행태로 계속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책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탄과 요구로 피해자가 받게 될 2중, 3중의 피해를 미리 막아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책위원 선임 시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직을 제외한 일반 교수 위원 3인의 선임에 있어 현재 학칙은 대책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교학부총장과 각 실처장들이 당연직으로 대책위원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일반교수 3인에 대한 선임만큼은 학생(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의 추천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현재 반성폭력 학칙 개정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김중기 대책위원장의 무책임한 사직 사태를 접하며 새로운 요구로 학칙 개정안을 수정하여 다시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개정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하여 대책위 규탄과 함께 독자적인 목소리로 싸워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반성폭력 학칙 개정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학생측 개정안 실현!'

반성폭력 학칙 개정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해 12월 제1차 학칙개정 소위원회3)(이하 소위원회)가 열렸고, 학교 측에서도 학칙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번 교육투쟁의 중요한 사안 중 한가지로 여전히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꼽고 있는가. 그것은

3) 소위원회에는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학생대표 2인, 성폭력 상담실 전임상담원이 참석하였다.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개정’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진정한’ 목적 실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성폭력 학칙⁴⁾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학칙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학칙이 제정된 이래 끊임없이 드러나고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제1차 소위원회 결과와, 그 동안 학교가 성폭력 문제에 있어 어떻게 일관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모두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일례로 지난 소위원회 때 가해자 지위 변동⁵⁾과 관련한 논의에서, 가해자가 졸업을 해버리거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졸업유보나 사표수리연기와 같은 조치로 사건이 미해결로 끝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요구는 ‘가해자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지만,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지 않아도 졸업허가를 해 주지 않는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큰 아량으로 가해자들이 마음껏 졸업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기가 막힌 노릇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인 2003년 교육투쟁 때 도출된 협약서에는 분명히 성폭력 상담실 전임 상담원을 2명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강의평가서에 교수의 성폭력적 발언 여부를 첨가하겠다고던 약속, 여교수 임용 비율을 20%로 실현하겠다고는 약속이 모두 언제 지켜질지 모를 기만적 약속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성폭력 학칙을 개정하겠다는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피해자가 학칙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 조항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다듬어 보완한 학칙 개정안이 소위원회 테이블에서 무참히 잘려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반성폭력 학칙 개정’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학생측 개정안 실현!’을 내걸고 싸워야 한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학교 측의 기만적 약속에 걸려들어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 - 교수성폭력 특별 조항 신설, 성폭력 상담실 독립

개정안에 넣어봤자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 너무도 뻔해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포기해버리기엔 또한 너무도 절실하여 다시금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교수성폭력 특별 조항 신설과 성폭력 상담실 독립이다.

강의평가서에 교수의 성폭력적 발언 평가 항목 하나 넣는 것도 지키지 않는 학교를 보며 한 발 양보하여, 특별조항의 형식은 아니지만 학칙에서 교수성폭력 사건이 교묘히 빠져나갈 구멍을 막기 위해 그 내용들을 개정안에 녹여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연세대학교에서만도 미해결로 끝나버린 3건의 교수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며 또한 동국대, 서울시립대, 한국교원대, 서강대, 부산대 등에서 우후죽순처럼 불거져 나오는 교수성폭력 사건 소식을 접하며, 그 동안 묻혀져 있다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교수성폭력 사건을 학칙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수성폭력 특별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일부 교수들은 끊임없이 성폭력 가해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징계도 하물며 저지도 받지 않은 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반성폭력 학칙이 실제로 그들에게 전혀 위협(혹은 경고조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똑똑한 가해 교수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 덕분에 피해 학생이 결코 문제제기 하지 못할 것임을 너무도

4)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연세대학교에서는 실제로 가해자의 지위가 변동됨에 따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대책위가 사건을 종결지어버리는 경우가 수차례 계속되었다.

잘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성폭력을 학칙으로 막지 못한다면 누가, 무엇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직위에 의한 권력을 매개로 한 교수성폭력은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가해 행위라는 점을 상기할 때, 반성폭력 학칙이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자리 학칙도 되지 못할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 및 정책은 성폭력의 예방과 처리, 근절의 모든 차원에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대학 내의 위계나 권력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⁶⁾ 따라서 우리는 당면한 과제로 교수성폭력 특별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더 이상 교수 직위를 악용하여 성폭력 가해를 저지를 수 없도록 실질적인 압력으로 학칙을 실현시켜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성폭력 상담실의 독립성 확보. 성폭력을 둘러싼 사회적인 인식들을 살펴보았을 때,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 상담기관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성폭력은 흔히 말하기 꺼끄러운, 쉬쉬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거나 혹은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별 것 아닌 일로 괜히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되며, 사건에 대한 가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나온 무수한 질문들, 오해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가해자 중심의 사회에서 성폭력을 문제제기하는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지지와 실질적인 사건 해결 지원을 보장하는 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또한 학내의 성폭력 상담실은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교내에서 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연세대학교 성폭력 상담실은 이런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학교 성폭력 상담실은 현재 여학생처 산하 기구로 존재하며, 상담원 한명만이 상담실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여학생처의 하위 기구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학생처의 업무와 혼재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상담실의 독자적인 상담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다. 또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내 행정에서 상담실의 업무가 간과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상담실에서 진행되는 업무는 ‘여학생처 산하의 한 기관’이 하는 일로 취급되어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학내 다른 기관들 사이에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담실이 독자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하며, 상담인력 보충과 상담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장 직선제! 학내 여성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는 총장 후보들을 인정할 수 없다!

총장 직선제와 더불어 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학생 참여를 보장시켜야 한다!

반성폭력 학칙 개정 - 학생측 개정안 실현!

성폭력 대책위원회 정상화/대책위원 선임시 학생참여 보장/

교수성폭력 특별 조항 신설/ 성폭력 상담실 독립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16대 총여학생회

6)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중